

- 2026년 3/4분기 운서1동 주민자치센터 -  
**골프교실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**

2026년도 3/4분기 운서1동 주민자치센터 골프교실 프로그램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6. 6. 22.

인천광역시 중구 운서1동장

**1. 모집개요**

- 수강기간 : 2026. 7. 6.(월) ~ 9. 30.(수)
- 접수기간 : 2026. 6. 29.(월) ~ 7. 1.(수) 09:00 ~ 17:00
  - ※ 6. 29.(월) ~ 6. 30.(화) : 운서1동 주민 우선 접수
  - ※ 7. 1.(수) : 정원 미달일 경우 타동 접수 가능
- 신청방법 : 선착순 현장 방문 접수
  - ※ 온라인 접수 및 점심시간(12:00 ~ 13:00) 접수 불가
- 접 수 처 : 운서1동 주민자치센터 3층
- 모집강좌

분 야	프로그램명	비 고
운동	골프교실(A반, B반, C반, D반)	골프교실은 클럽72골프연습장에서 진행

## 2. 모집인원

모집인원 : 4개 프로그램 총 40명(중복신청 불가)

분 야	프로그램명	요 일	시 간	장 소	모집인원	비 고
운동	골프교실 A반	월/목	10:00 ~ 11:30 [90분]	클럽72 골프 연습장	10명	클럽72 소속 강사가 진행
	골프교실 B반	월/목	14:00 ~ 15:30 [90분]		10명	
	골프교실 C반	화/금	10:00 ~ 11:30 [90분]		10명	
	골프교실 D반	화/금	14:00 ~ 15:30 [90분]		10명	

## 3. 수강료

수강료

구 분	접수비	레슨비	타석이용료	합 계
수강료	60,000원 (3개월)	150,000원 (3개월)	150,000원 (3개월)	360,000원
납부장소	주민자치센터	클럽72		
납부방법	수강 신청시 전액 납부	레슨비 50,000원 + 타석이용료 50,000원 = 100,000원씩 매월 납부 ※ 7월 10만원, 8월 10만원, 9월 10만원		
감면여부	감면자격 해당될 경우 접수비 감면	감면 적용 없음		관련 사항 하단 참고
환불여부	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환불	환불 불가		

#### 4. 유의사항

- 골프교실 등록 후 명의변경, 양도양수, 중도해약 불가**

※ 골프교실은 운서1동 주민자치회와 클럽72골프연습장 협약에 따라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, 클럽72에 납부하는 레슨비와 타석이용료는 환불 불가능 (주민자치센터에 납부하는 접수비는 환불 가능)

- 1인 1강좌만 신청 가능(중복신청 불가)**
- 3분기 신청한 자는 4분기 재등록 불가**

#### 5. 기타사항

- 6월 29일(월)부터 6월 30일(화)까지는 운서1동 주민만 접수가 가능하며, 정원 미달일 경우 7월 1일(수)부터 타동(운서2동 포함) 주민 접수 가능
- 접수비는 주민자치센터에 현장 방문 접수할 때 3개월분 납부(6만원) 하며, 레슨비와 타석이용료는 클럽72에 월별 개별 납부(10만원)
- 각 강의별 신청한 해당 요일, 해당 시간대에만 타석 이용이 가능하며, 그 외 시간에는 이용 불가
- 수강기간 중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별도의 보강은 진행되지 않음
- 타석 배정은 클럽72 프린트에서 배정되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- 골프교실을 등록한 주민이 회원카드 또는 개인물품을 제시할 경우, 클럽 무료 렌탈 및 샤워장 무료 이용 가능
- 클럽72에 신청자별 사진 등록을 위한 신분증 지참 필수
- 문의처 : 운서1동 주민자치회(☎032-760-6396)

※ 접수비 감면

감면대상 및 감면비율

감면대상	감면비율
①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그 가족 ②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 가족 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(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)	전액감면 (100%)
④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 ⑤ 다자녀 가구(미성년 2자녀 이상) ⑥ 70세 이상(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	반액감면 (50%)

증빙서류

- ① 수급자 및 그 가족 : 수급자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가족 접수 시)
- ② 장애인 및 그 가족 : 장애인증명서, 주민등록등본(가족 접수 시)
- ③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: 국가유공자증,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  
관계증명서(유족 또는 가족 접수 시)
- ④ 한부모 가족 : 한부모가족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
- ⑤ 다자녀 가족 : 주민등록등본
- ⑥ 70세 이상 : 신분증(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